

중증치매노인의 방임사례

I. 사례개요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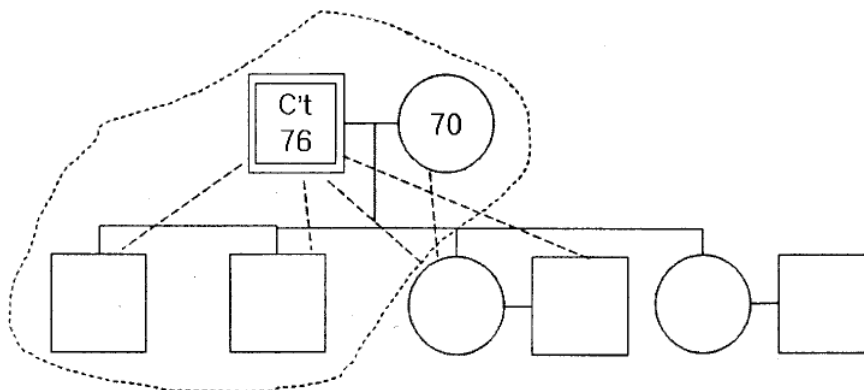
- 치매 중증의 c't가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 감금된 상태로 방임되고 있다며 노인보호전문 기관에 사례 접수됨.
- c't는 방문보건센터의 관리대상자이나 방문시, 다른 가족들이 집을 비운 상태에서 문이 잠겨있어 c't 및 가족들을 대면하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방 창문을 통해 방안의 c't의 상태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창밖에서 본 c't는 몹시 불결한 상태이며 대변을 창밖으로 던지거나 서랍장에 넣어두는 등 중증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하지를 사용하지 못해 일어서지 못하는 등 스스로 위생관리를 할 수 없음.

2. 접수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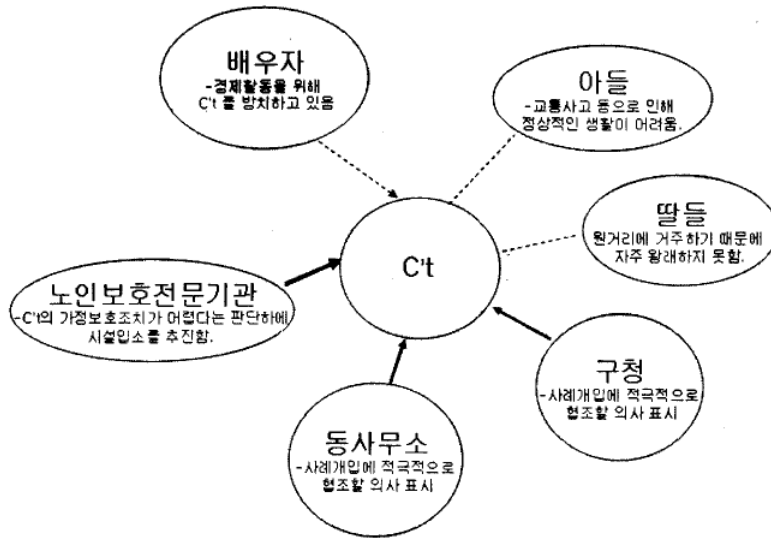
- c't : ○○○(76세/남)
- 학대행위자 : 배우자(70세)
- 학대유형 : 방임
- 학대상황 :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는 c't가 방에 감금되어 정상적인 케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

II. 사정

1. 가계도



2. 생태도



3. 문제 사정

가. c't 사항

- 신체적 : 중증의 치매를 가지고 있으며 대소변 관리가 되지 않아 위생상태가 몹시 불량한 상태임. 5년 이상 방안에서만 생활하여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어 있으며, 하지를 사용할 수 없음.
- 환경적 : 전기 시설을 뜯어내거나 손가락을 집어 넣는 등 위험 행동을 보인 관계로 거주하고 있는 방의 전기 시설이 차단되어 있으며 난방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음.
- 주간에 집에 혼자 있으며, 안에서 대문이 잠겨있고 피해자의 방문이 밖에서 잠겨 있어 집안으로 들어가 c't상태를 볼 수 없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볼 수 있음.
- c't의 방 창틀에는 대변이 묻어 있으며 방안 서랍장에도 대변이 담겨져 있고 방안 벽지에도 대소변이 묻어 있는 등 위생상태가 몹시 불결함.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방문한 사실이 없어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며, 조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나. 학대행위자 사항

-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유는 학대행위자의 소득이 가족의 유일한 소득원이기 때문임. c't와 학대행위자는 두 명의 아들과 동거하고 있으나 두 아들 모두 공사장 일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여 현재 노동 능력이 없는 상태로 가계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 학대행위자는 c't의 부양에 대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인 여력이 없

어 다른 부양안을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 학대행위자는 특히 현재의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으로 본인의 생업에 지장이 생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

다. 기타주변인 사항

- 방문보건센터 : c't 사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의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
- 관할 동사무소 : 방문보건센터와 마찬가지로 사례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한 적극성을 보임.
- c't의 자녀 : 장남의 경우 20년전 머리를 다친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차남도 어깨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후 재활 치료 중임. 딸은 가끔 왕래하고 있으나 부양을 위한 지원을 할 만큼의 여유는 없으며 거주지가 멀어 잦은 왕래는 어려운 상황임.

4. 욕구

c't 욕구	신고자 욕구
중증 치매로 인해 본인의 욕구 및 의사를 표현하지 못함.	피해자 안전확보 및 환경개선

III. 개입

1. 개입목표 및 계획

- 계획 I. 지역사회 기관 통합 사례회의(동사무소, 방문보건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를 실시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는 c't에 대한 장기 지원책 마련.
- 계획 II. 가족상담을 실시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시킴.
- 계획 III. 오랜기간 방임되어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없어 우선적으로 건강상태 확인 및 치매 진단 및 검사결과에 따른 의료적 처치.
- 계획 IV. 병원 치료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연계.
- 계획 V. 피해자에 대한 수급권을 연계하여 장기 입소에 대한 자원 확보.

2. 개입과정

가. 사례 관련 정보 파악

접수 당시 신고자가 c't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c't 사례를 관리하던 관할 방문보건센터를 통해 기본 정보 및 사례 개요 파악함.

나. 현장조사

- 학대행위자의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보건센터 담당자와 동행하여 c't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함.

- 신고된 내용과 같이 밖에서 문이 잠긴 방안에 c't 혼자 방임되어 있었으며 위생상태 불량 및 c't의 치매 상태 확인함. 대문이 잠겨있고 집안에 다른 가족들이 없었기에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며 c't 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 상태 확인함.
- c't는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일어서지는 못하나 상반신의 사용은 자유로운 상태임.
- 식사 등이 제공되는 것으로 보이며, 방에 용변을 위한 통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사용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수염 및 치아, 의복 상태 등을 볼 때 누군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됨.

다. 가족상담 실시

가족상담을 실시하여 c't와 가족에 대한 히스토리를 파악하고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방안 논의.

□ 배우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 자체에 대한 반감은 없었으나 본격적인 개입 시 본인의 직장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꺼려하여 개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임.
- 사례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인지시키는 한편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지역사회 각 기관에서 c't를 주시하고 있으며 문제상황 해결에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림. 연계가능한 자원에 대해 설명하고 c't보호를 위한 가족의 역할을 강조함.

라. 지역사회 연계 사례 회의

□ 관할 동사무소

- c't 현장조사 결과를 알리고 사진, 동영상 등 자료를 제시하여 개입의 시급함을 인지시킴.
- 관할 동사무소 역시 사례의 심각성에 동감하였으며 c't의 단기적인 보호를 위한 일시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장기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에 동의함. c't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으로 노인전문 요양원보다는 병원 입원이 필요할 것이나 가족들이 비용 부담 능력이 없음. 이에 긴급복지 지원비를 신청하여 선보호 조치하고, 보호가 진행 중인 기간 동안 수급권을 책정하여 장기적인 보호 실시함.

□ 방문보건센터 : c't의 후송시 대략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후송방안 등에 대한 방안 마련함.

마. 입원 가능한 병원 모색 및 후송

c't가 거주하는 지자체 내에서 중증 치매와 하지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함. 일반 병원의 경우 중증 치매 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원이 불가능했음. 노인전문요양병원을 탐문하여 앰블런스 후송 및 입원조치 함.

바. 노인전문병원 일시보호 및 c't 건강 상태

- 입원 당일 c't의 목욕을 위해 탈의 하는 과정에서 c't의 정강이뼈가 어긋나 있는 것과 c't의 발가락 말단부가 괴사하여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함. 동행한 배우자 역시 발의 상태는 모르고 있었다고 하며 오랜 방임으로 인해 괴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진행 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임.
- 담당의가 방문하여 c't 상태를 살핀 후 정확한 검사를 해 봐야 할 것이나 당장 보이는 증상으로는 당뇨 합병증이나 동상으로 인한 신체말단부 괴사일 수 있다고 함.
- 그 외 c't는 병실에 만족하는 기색을 보였으며 상담원 보는 가운데 스스로 식사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배우자 역시 피해자 입원 상황에 대해 만족하였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감사를 보내 옴.

사. c't 병원비 관련

□ 노인전문 병원

- c't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는 가능하나 발의 상태, 치매 진단 등은 해당병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음.
- 간병인 비용 등에 대해서는 선입급이 원칙이나 본 센터와의 협의로 피해자가 긴급지원비 또는 수급권이 연결된 예정임을 알려 후불로 지급할 것임.

□ 관할 동사무소

- c't가 입원된 병원에서 c't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면 긴급지원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며, 긴급지원비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c't 상태에 대한 진단서가 발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함.
- 현재 상태에서 c't를 다시 다른 병원으로 후송할 경우 2중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최대한 빨리 수급책정 또는 의료특례를 지정하고 소요되는 2주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나누어 부담하기로 함.

아. 가족상담

□ 배우자

- 입원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으나 추후 발생할 병원비에 대해서 부담할 능력이 없음을 여러 차례 호소함.
- 병원비에 대해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관할 동사무소 등의 기관에서 마련할 것임을 인지시키는 한편 가족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임을 알리고 병원비 및 간병인비 외 간식비나 개인 위생용품 등에 대한 제공의 의무가 있음을 인지시킴. 간병인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c't의 보호에 성의를 다할 것을 알림.

- 차남 : c't 입원 사실에 대해 알리고 부양의무자로서 역할과 경제적인 비용의 감소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간병을 전담할 것을 당부함. 차남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요구에 수긍하였으나 실제 사례 개입 중 c't에 대한 간병을 거둔 사실은 없었음.

자. c't 수급 책정 과정 : 관할 동사무소

수급권 신청에 대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c't의 두 아들이 동거하고 있어 이들의 주소지 및 거주지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차남과 장남이 각각 지인의 집으로 거주지를 옮겨 가면서 서류 정리가 완료되었음.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2주 내 수급책정 완료라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며, 구청에 서류가 접수 된 후 조사가 실시될 때까지의 시일 역시 예상보다 길어져 일시보호 기간 2개월여 만에 수급권 책정됨.

차. 긴급지원비 신청 : 관할 구청

- c't의 상황을 알리는 한편 그간 진행된 사례의 정황을 설명하고 피해자가 수급권이 책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장기적인 보호를 위해 퇴원 후 전문요양원 입소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시킴.
- 관할 구청 측에서는 c't가 입원된 이유가 생명의 위급함이 아닌 것을 판단된다고 하며 치매는 생명이 위급한 질환으로 볼 수 없으며 괴사된 발의 원인이 무좀 또는 티눈 등으로 소견된 이상 긴급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구청 측에 c't발견 당시 상황에 대해 동영상, 사진 등 자료를 제출하고 명백한 학대 상황에서 병원 후송이 불가피 하였음을 강조하였고, 이와 같은 의견이 수렴되어 긴급지원비 지급 결정됨.

카. c't 일시보호

- 긴급지원비 책정으로 c't가 퇴원조치 되었으며, 시설입소가 책정된 상황으로 시설입소를 신청 하였으나 대기자로 인해 퇴원 후 바로 입소가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사전 협약이 체결된 노인전문요양원에 의뢰하여 입소 대기 기간 동안 일시보호 조치 됨. 병원에서의 치료 및 간병으로 피해자는 건강을 많이 회복한 상태이며 부축을 받으면 몇 걸음 정도의 거동이 가능함.

타. 긴급지원비 사후 제출을 위한 건강 진단

- c't에 대한 긴급 지원비는 병원측에 지급 되었으나 사후 조사를 위해 c't에 대한 건강 검진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구청에 제출해야하는 상황임.
- 일시보호 기간 중 배우자가 피해자를 모시고 나와 지역내 대학병원에서 검사 실시함.

□ 치매 검사 : 총 4차례 정밀 검사가 실시되며 1개월 이상 시일이 소요됨.

□ 정강이뼈에 대한 검사

- 양쪽 다리 모두 오래전 골절되었으며, 골절 후 치료가 되지 않아 엇갈린 상태로 굳어진 것으로 고령인 피해자가 특별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는 아님.
- 발의 괴사에 대해 : 악성 무좀이 너무 오랜기간 방치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이 역시 약물치료 등으로 치료 가능한 상태임.

파. c't 위협 행동

- 일시보호 중인 시설측에서 c't가 일시보호 며칠 만에 위협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연락을 취해 옴. 기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c't는 종사자의 관리가 소홀한 새벽시간에 혼자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던 중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함. 이에 침대 생활이 위험하다 판단하여 바닥에서 생활하게 하였음.
- 바닥에서 생활하던 c't새벽시간에 옆에서 자고 있는 입소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처를 입혔으며 자해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있음. 이에 시설 입장에서 더 이상 일시보호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 왔으며 10일만에 일시보호 종료됨.

하. c't 귀가

- 일시보호를 연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직 시설 입소 대기자에 올라 있는 c't가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상황으로 입소 대기 기간 동안 우선 귀가 조치 됨. 귀가 당시 c't는 부쩍 수척해진 모습이었으며,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허리에 부상을 입었는지 일어나 앉지 못하는 상황임.
- 수급권이 책정된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일을 하기보다 피해자의 간병에 주력할 것을 당부하고 생계비를 수급 받아 생활비 충당할 것을 권유함. 배우자는 직업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간병인 또는 바우처 등 가정 부양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나 이 역시 거부함. 거부 이유는 배우자 본인이 c't 보호를 위해 근무 시간을 조정하여 부양이 가능하기 때문임.

거. c't 병원 후송

- c't에 대한 치매 검사가 예약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안내 및 병원내방을 당부하기 위해 배우자 상담을 실시한 배우자는 c't가 귀가 후 줄곧 식사를 하지 못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함. 이에 방문보건센터와 동행하여 피해자 상태를 확인함.
- 방문보건센터 : c't가 현재 허리 등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식사를 전혀 하지 못해 기력이 떨어진 상태로 치매 검사보다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함.
- 119에 협조를 구하여 c't를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중환자실 입원됨.

너. 병원 사회사업 실 연계

- c't의 상황을 알리고 병원 측의 환자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해 파악함. 사회사업실에서는 c't에게 특별히 제공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는 없다고 함.
- c't는 기력이 떨어진 것 외 특별한 치료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입원 4일 현재 일반병실 또는 전문 요양원 보호가 가능한 상태라고 함.

더. c't 귀가 및 사망

c't에 대해 병원 측에서 퇴원 가능 진단이 나왔으며 이에 따라 배우자는 c't를 귀가조치 하였음. 공적인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안내 하였으나 근무 시간 조정으로 c't 보호가 가능하며 이를 거부하였음. 귀가 후 20일만에 c't가 사망하였고 사례 종결됨.

IV. 평가 및 제언

오랜 기간 방임되어 c't에 대한 장기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기 전 c't가 사망한 사례이다. 그러나 사례 진행 중 노인보호전문기관, 관할 구청, 동사무소, 방문보건센터, 노인전문병원 등 지역사회 각급 기관에서 사례와 관련하여 문제 해결과 c't 보호를 위해 개입 되어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했다.

노인학대 사례의 조기 발견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며, 지역자원 협력을 통한 다각적 문제 해결 방안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이다.

하지만 배우자 외 자녀들이 개입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던 것이 아쉬운 점이라 생각되며, 무엇보다 c't가 장기보호 조치 전 사망한 일이 가장 안타까웠다.